
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8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서미화 · 허성무
양문석 · 임오경 · 민형배
양부남 · 박수현 · 장종태
이개호 · 안도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·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·체계적·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

제6항 등).
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6호 중 “보급”을 “보급·확산과 국어와 연계한 한국문화 교육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제6항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, “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두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,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	제6조(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
① ~ ② (생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국어의 국외 <u>보급</u> 에 관한 사항	6. ----- <u>보급·확산과 국어와 연계한 한국문화 교육</u> ----- -----
7. ~ 12. (생략)	7. ~ 12.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세종학당재단 설립 등)	제19조의2(세종학당재단 설립 등)
① ~ ⑤ (생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<u>세종학당정책협의회</u> 를 <u>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	⑥ ----- ----- --- <u>대통령령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두어</u> <u>야 한다.</u>
<신 설>	⑦ <u>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</u>

⑦ ~ ⑩ (생 략)	<u>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, 정 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야 한다.</u> ⑧ ~ ⑪ (현행 제7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	--